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8) 상정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8)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권 희 춘)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402호, 2009. 2. 3.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9호, 2009. 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현행 법령에 맞추어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9조,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률의 사전 검토 후 공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관련 법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7호
의 결 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출년월일 : 2009.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402호, 2009. 2. 3.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9호, 2009. 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현행 법령에 맞추어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의회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1.~3.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것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1항제3호의 자 ---------
<신 설>	제6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조(시의회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생 략)	제10조(운영규정) (현행 제9조와 같음)

(현행 조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 09. 10 조례 제1241호]
[2005. 11. 11 조례 제2119호]
[2006. 05. 11 조례 제2148호]
[2008. 11. 17 조례 제2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법관·교육자 또는 덕망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명
2.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부천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것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것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993.09.1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3]